

| | |
|------|--------------|
| 문서번호 | 동경기장운영처-9115 |
| 보존기간 | 3년 |
| 결재일자 | 2021.12.10. |
| 공개여부 | 공개 |

| | | | | |
|-----|-----|----------|---------|--------------|
| ★차장 | 팀장 | 동경기장운영처장 | 문화체육본부장 | 이사장 |
| 박애란 | 조윤모 | 박정우 | 심영신 | 12/10 조성일 |
| 협 조 | 팀장 | 백공명 | | |
| | | | | |
| | | | | |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1.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상의 용어중 대행사업체계인 현 상황에 맞는 용어로 수정 및 분명한 관리비 산출기준으로 일부개정함으로써 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에 관련 용어(위수탁, 관리위탁 등) 수정 및 삭제
- 나. 돔구장 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의 관리비 산정기준', 시설관리 등의 내용 보완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탁”을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대행”으로 하며,
“부대시설(이하 “돔구장”이라 한다)”를 “부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하 “돔구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서남권돔구장 위·수탁 협약서(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 포함)”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중 “서남권돔구장 권역 내의 부대 체육시설을 말한다”를 “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 1항 중 “위탁시설의” 을 “사용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 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 4항 중 “제 3호”를 “제 3항”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조(시설 관리) 주무부사장은 돔구장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 수행한다.

1. 돔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유지관리
2. 돔구장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3. 돔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조치
4. 돔구장 부대시설의 운용 및 정비
5. 돔구장 수복 및 녹지대 유지관리
6. 돔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의 시행, 관리
7. 준공된 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조치 관리

제17조 및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중전 제18조) 제목 중 “위탁시설”을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를 “수허가자”로, “위탁”을 “허가”로 하며, 제18조(중전 제19조) 중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을 “허가받은 시설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9조(중전 제21조) 제1항 중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인권 및 정기권 발행”을 “정기권 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로 정하는 바”를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은 서남권 돛구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별지 1〉 또는 〈별지 2〉”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1〉”을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으로,

“〈별지 2〉”를 “[별지 제2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구비서류 중 “전용사용 및 상업사용”을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사용, 상업사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관리비 산정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 구 분 | 부 과 기 준 |
|----------|---|
| 전기사용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요금 : KW당 기본요금 단가 x 기본용량 · 개별사용료 : KW당 전력량요금 단가 x 사용량 · 공용사용료 : 총비용 x 적용배분율¹⁾ |
| 상하수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용료 : 총비용 x (개별사용량/총사용량) · 공용사용료 : 총비용 x (공용사용량/총사용량) x 적용배분율 |
| 도시가스요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사용료 : 총비용 x 적용배분율 <p>(* 개별사용료는 도시가스 사용 개별당 부과됨)</p> |
| 재해복구공제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보험료 x {허가면적(전용+공용) / 연면적} |
| 교통유발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부과금액 · 임차인 부담금²⁾ x (1 - 감면율 1) x (1 - 감면율 2)³⁾ |

1) 적용 배분율(%) = 지하 판매시설 전용면적의 비율
 2) 임차인 부담금: 임차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구분 및 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허가면적(전용+공용)에 따라 임차인별로 상이함
 ※ 시설물의 구분 및 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함
 3) 감면율: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감면율의 개수와 각 감면율에 상응하는 감면기준은 부과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 시 ⇨ 감면율1: 공공건물감면 / 감면율2: 수요관리감면 등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서남권돔구장(고척스카이돔)과 그 부대 시설(이하 “돔구장”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u>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대행 받은 서남권돔구장(고척스카이돔)과 그 부대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u> ----- -----.</p> |
| <p>제2조(적용범위) 돔구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u>동 조례 시행규칙, 서남권돔구장 위·수탁협약서(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u></p> | <p>제2조(적용범위) ----- ----- ----- 동 조례 시행규칙 -----.</p> |
|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3. (생략) 4. “생활체육시설” 이라 함은 축구장, 풋살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u>서남권돔구장 권역내의 부대 체육시설을 말한다.</u></p> |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을 말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사용허가) ① 돛구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1> 또는 <별지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거나 1일 3,000명 이상이 입장하는 행사의 경우는 행사 30일 이전에 사용신청 하여야하고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사 7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p> | <p>제7조(사용허가) ① ----- ----- ----- -----<u>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u> ----- ----- ----- ----- ----- ----- ----- -----.</p> |
| <p>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p> <p>① 주무부서장은 사용인이 매월 ‘관리비 산정기준(별표1)’에 따라 돛구장 <u>위탁시설의</u>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주무부서장은 관련 법령, 조례 및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돛구장 <u>위탁시설의</u> 적정한 사용료를 사용인으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주무부서장은 상업사용료 중 기타물품 판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매점의 상품판매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허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p> | <p>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p> <p>① ----- -----<u>사용에 따른</u> -----</p> <p><삭 제></p> <p>② (<u>현행 제3항과 같음</u>)</p>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u>①~③ (생략)</u> ④ 제1항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내부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시안의 심의에 적합한 내부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u>⑤ (생략)</u></p> | <p>제12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u>①~③ (현행과 같음)</u> ④ -----제3항----- ----- -----. <u>⑤ (현행과 같음)</u></p> |
| <p>제14조(시설물 대장) <u>주무부서장은 돛구장내 주요시설 및 재산에 관한 기본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u></p> | <p>제14조(시설 관리) <u>주무부서장은 돛구장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돛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유지관리 2. 돛구장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 돛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조치 4. 돛구장 부대시설의 운용 및 정비 5. 돛구장 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 6. 돛구장 건축물 및 부대시설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시행, 관리 7. 준공된 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조치 관리 |
| <p>제4장 시설의 <u>관리위탁</u> 등 제17조(기타 시설운영의 위탁) <u>① 효율적인 돛구장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돛구장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업무를 포함한다) 중 일부를 당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 <p>제4장 시설의 <u>운영</u> 등 <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u>돛구장시설운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u></p> <p>1. <u>돛구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능력보유 수준</u></p> <p>2. <u>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위탁운영 실적</u></p> | |
| <p><u>제18조(위탁시설의 관리책임)</u></p> <p>① 주무부서장은 사용자 등(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각종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경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③ (생략)</p> | <p><u>제17조(사용-----)</u></p> <p>① -----수허가자-----허가-----</p> <p>②, ③ (현행 제18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
| <p><u>제19조(지도 감독)</u></p> <p>① 주무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 돛구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③ (생략)</p> | <p><u>제18조(지도 감독)</u></p> <p>① -----허가받은-----</p> <p>②, ③ (현행 제19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0조(위탁 등의 취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 <p><삭제></p> |
| <p>제5장 부설주차장</p> <p>제21조(주차장 운영) ① <u>돔구장 부설 주차장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기준을 적용한다.</u></p> <p>② 주무부서장은 부설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u>할인권 및 정기권 발행을 할 수 있다.</u></p> <p>③ 기타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u>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 <p>제5장 부설주차장</p> <p>제19조(주차장 운영) ① ----- <u>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감면등</u>----- ----- -----.</p> <p>② ----- ----- <u>정기권 발행을 할 수 있다.</u></p> <p>③ 기타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은 서남권돔구장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에 의한다.</u></p> |
| <p>제22조(시설의 범위 등)</p> <p>제23조(시설 이용 약관)</p> <p>제2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p> | <p>제20조(시설의 범위 등)</p> <p>제21조(시설 이용 약관)</p> <p>제22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p>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별표1〉 【현행】</p> <p>관리비 비목별 산정 기준</p> <p>(표 생략)</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개정안】</p> <p>관리비 산정 기준(<u>제8조 제1항 관련</u>)</p> <p>(표 생략)</p> </div>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p><별지1> 【현행】</p> <p>< 별지 1 ></p> <table border="1" data-bbox="225 528 778 689"> <tr> <td>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td> </tr> <tr> <td>(표 생략)</td> </tr> <tr> <td>※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td> </tr> </table>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표 생략) | ※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 <p>【개정안】</p> <p>[별지 제1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36 510 1390 703"> <tr> <td>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td> </tr> <tr> <td>(표 생략)</td> </tr> <tr> <td>※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u>부속시설사용</u>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td> </tr> </table>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표 생략) | ※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u>부속시설사용</u>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 (표 생략) | | | | | | | |
| ※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 | | | | | | |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 (표 생략) | | | | | | | |
| ※ 구비서류: 전용사용 및 <u>부속시설사용</u>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 | | | | | | |
| <p>< 별지 2 ></p> <table border="1" data-bbox="217 786 778 1043"> <tr> <td>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td> </tr> <tr> <td>(표 생략)</td> </tr> </table>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표 생략) | <p>[별지 제2호 서식](제7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31 786 1394 1043"> <tr> <td>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td> </tr> <tr> <td>(표 생략)</td> </tr> </table>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표 생략) | | |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 | | | | | |
| (표 생략) | | | | | | | |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 | | | | | |
| (표 생략) | | | | | | | |